

DDA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최근 동향

일 시 : 2007.8.24(금) 16:00

장 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 표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목 차

1. 관세감축 공식
2. 관세감축 공식관련 요소
3.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Para.8)
4. 양허율이 낮은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Para.6)
5. 분야별 자유화
6. 소규모 경제국가(SVEs)
7. 최빈개도국(LDCs) 및 능력배양
8. 신규가입국
9. 보완적 modality
10. 저율관세 철폐
11. 비관세 장벽
12. 특혜잠식
13. 비농산물 환경상품

1. 관세감축공식

(모델리티)

- 선진국과 개도국에 별도의 계수를 부여하는 스위스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되 선진국은 계수 8-9, 개도국은 계수 19-23 설정

※ 이 경우 선진국은 8-9% 이하 수준으로, 개도국은 19-23% 이하 수준으로 관세가 하향조정되는 효과 발생

$$\text{※ 최종관세} = \frac{\text{계수(상한)} \times \text{최초관세}}{\text{계수} + \text{최초관세}} \quad \text{계수} = \text{선진국}([8-9]), \text{개도국}([19-23])$$

(검토의견)

- 선·개도국들의 이견대립이 강했던 계수차이의 중간 수준(middle ground)를 채택하여 주요국의 입장을 수렴하고 개도국 신축성을 통한 ambition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 의장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관세감축공식 계수 관련, G-4 및 중도그룹의 기존 입장
 - 미국 및 EC : 선진국 10, 개도국 15-18
 - 브라질 및 인도 : 선진국 10, 개도국 30
 - 중도그룹 : 선진국 10 미만, 개도국 10대 후반-20대 초반

※ 중도그룹 :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태국

- 의장 제안 선진국 계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실행세 감축률 평균은 미국(22.5-24.1%p), EC(25.2-27.0%p)이며 우리나라는(30.9-34.1%p) 감축
- 의장 제안 개도국 계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실행세 감축률 평균은 브라질(6.3-10.8%p), 인도(6.7-13.5%p)로 감축

- 그러나, 브라질 및 인도는 평균 양허세 감축률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 다분

※ 개도국 계수[19-23] + 미양허품목 mark-up 20 + para 8(a) 적용시 개도국의 평균양허세 감축률은 52.3-56.6%p(브라질), 57.4-61.2%p(인도)

<관세감축 공식 계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선진국 계수 분석(미양허 품목 Mark-up 20)

계수	%	미국	EC	한국
8	평균양허감축률	24.1	26.6	48.9
	평균실행감축률	24.1	27.0	34.1
9	평균양허감축률	22.5	24.9	46.6
	평균실행감축률	22.5	25.2	30.9

※ 2006.5월 WTO 사무국 NAMA Simulation 자료 사용

개도국 계수 분석(미양허 품목 Mark-up 20)

계수	%	브라질	인도
19 + para 8(a)	평균양허감축률	56.6	61.2
	평균실행감축률	10.8	13.5
23 + para 8(a)	평균양허감축률	52.3	57.4
	평균실행감축률	6.3	6.7

※ 2006.5월 WTO 사무국 NAMA Simulation 자료 사용

- 선진국은 그간 주장했던 개도국 계수 수준에서 후퇴한 수준의 level of ambition에 대한 실망(disappointment)을 제기하고, 수준 높은 ambition 달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의장 제안 계수 수준이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를 만족시킬 수 없는 범위라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 존재
- 다만, para. 8, 소규모경제(SVEs) 등에 대한 개도국 신축성 부여 방안에 있어서 다소 신축적인 의장 제안이 상당수의

개도국들의 우려를 상쇄하여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은 NAMA 의장 text 초안에 대해 “개도국이 치러야 하는 댓가는 가혹한(severe) 수준”이라고 평가

- 의장이 제안한 선·개도국 계수는 실질적인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선·개도국간 계수 차이를 한자리수 이내로 유지하자는 우리 입장을 유지하는데 다소 어렵게 되었음.

(대응 방향)

- 실질적인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서는 선·개도국 계수차이는 가급적 한자리 수를 선호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나, 의장이 제시하는 선·개도국 계수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적인 입장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는 선에서 대응
 - 그러나, 계수의 차이는 가급적 작아야 실질적 시장접근 확대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

(수산물 민감성)

- 수산물 민감성 보호 관련하여, 기존 입장대로 우리는 제한된 수준의 민감품목에 대한 민감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
- 미국, EC 등 선진국은 특혜잠식 모델리티를 통해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민감성 보호를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 필요
- 우리나라는 그간 NAMA 협상 계기 양자협의 및 NAMA 협상 그룹 의장 면담 등의 기회에 개도국으로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는 국가에 대한 일부 품목에 대한 민감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수산물 민감성 보호 방안으로, 양허표 제출 단계에서 주요 이해관계국과 양자를 추진할 계획이나, 상당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 존재

2. 관세감축공식 관련 요소

(모델리티)

- 품목범위는 사전배제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
- 기양허품목은 UR 최종 양허세율, 미양허 품목은 2001.11.14 MFN 실행 세율+20 기준으로 감축하며, 선진국 5년, 개도국 9년의 이행 기간 부여
- 모든 비종가세는 종가세 상당치로 전환 및 양허
- 수입통계 자료 기준 기간은 1999-2001년
 - ※ 의장은 품목범위 관련 일부 이탈(deviation)이 있는 품목범위 리스트 도출이 가능함을 암시
 - 일 본 : HS 1212.20(해초류와 기타 조류), 1302.31(한천), 2106.90 ex(조제식료품(기타))을 비농산물로 분류
 - 스위스 : 사무국이 비농산물로 분류한 HS 05.08(산호, 패각류) 0511.91 (HS 03류의 사체), 1504.10(어류 유지), 1504.20(어류 유지), 2301.20(어류 조분)을 농산물로 분류
 - E C : 사무국이 비농산물로 분류한 HS 1603.00ex(어류 엑기스), 3302.10(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을 농산물로 분류
 - 인 도 : 사무국이 비농산물로 분류한 HS 1603.00ex(어류 엑기스), 1605(조제한 갑각류, 연체동물)을 농산물로 분류
 - 터 키 : 사무국이 비농산물로 분류한 HS 1603.00ex(어류 엑기스), 1604(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1605(조제한 갑각류, 연체동물)을 농산물로 분류

(검토의견)

- 미양허품목에 대한 mark-up(20)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5-30의 중간 수준)에서 설정되었는 바, 수용 가능함.
- mark-up은 결국 관세감축 공식과 연계되어 어느 수준의 mark-up을 적용하건 그 차이는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
 - 우리나라의 경우, mark up 20 또는 30을 적용했을시 평균 실행세 감축률 0.2%p 차이 발생
 - ※ 계수 8 + mark-up 20 인 경우, 평균 실행세 감축률 : 34.1%
 - 계수 8 + mark-up 30 인 경우, 평균 실행세 감축률 : 33.9%
-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미양허품목의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mark up(30)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견지
- 우리나라의 경우, 의장보고서(JOB(06)126/Rev.1)에 따라 NAMA에서 농업으로 이관될 품목은 HS 10단위 총 76개이며, 농업에서 NAMA로 이관될 품목은 없는바, 원칙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품목범위에 합의한 agreed list를 지지함.
 - NAMA → 농업 : 총 76개(해수부 소관 52개 + 산자부 소관 24개)
 - ※ 첨부 1 : NAMA에서 농업으로 이관될 품목 명단

(대응 방향)

- 그간 미양허품목 mark-up 수준에 대해 우리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mark-up(30)를 선호하고 있음.
 - 약간의 유연한 입장을 발휘하여 의장 제시 mark-up 수준에 대해 수용 가능하나, 20이하의 mark up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대응

- 품목범위와 관련하여 한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한 NAMA 품목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함.
 - 그간의 품목범위 관련 논의 동향을 감안시 두 나라(일본, 스위스)에 대해서만 deviation을 허용하여 footnote로 처리하자는 의장의 제안이 차선책(second best option)이라고 보임.
- 품목범위에 있어서 여타 국가들이 일부 국가에게 예외가 허용될 경우, 자신들도 추가적으로 예외품목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품목범위 관련 논의의 credibility를 저해하는 idea라고 판단됨.
- 아직까지 어떤 품목이 NAMA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에 대해 deviation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우리 국내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음.
 - 품목분류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차원에서 품목범위 관련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여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3.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NAMA Framework, para. 8)

(모델리티)

- 관세감축공식 적용대상인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
 - 각국의 비농산물 총수입액 기준 전체수입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비농산물 세번의 10%까지는 일반 관세감축율의 최소 50%를 감축하거나,
 - 각국의 비농산물 총수입액 기준 전체수입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비농산물 세번의 5%까지는 미양허 유지 또는 관세감축공식 적용 배제

- 다만, 특정 HS Chapter 전체 배제는 불가

※ ① 미양허를 유지, ② 관세감축공식 미적용은 혼합하여 쓸 수 있으나, 비농산물 총수입액 5% 비농산물 세번의 5% 기준을 초과하는 것 금지

○ 상기 신축성 조항을 사용하지 않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공식 적용시 개도국 계수+3 적용

(검토의견)

○ para. 8 개도국 신축성 관련,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 [10]의 브래킷이 제거

○ 한편, 특정 HS chapter 전체를 배제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부 상품(HS 85류 : 반도체, 휴대폰, HS 87류 : 자동차)에 수출이 집중된 국가들에게는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HS 85류(LCD 모니터, 반도체, 휴대폰 등) 관련 인도·브라질의 한국산 수입 규모>

국가	년도	전체 수입액(\$1,000)	한국산 수입액(\$1,000)	한국산 품목 비중(%)
인도	2003	6,485,918	994,199	15.3
	2004	8,674,508	1,148,122	13.2
	2005	11,946,076	1,465,433	12.3
브라질	2003	6,773,991	627,225	9.3
	2004	8,709,138	1,095,605	12.6
	2005	10,469,401	1,454,032	13.9

출처 : IMF, UNCOMTRADE

<HS 87류(자동차) 관련 인도·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수입 규모>

국가	년도	전체 수입액(\$1,000)	한국산 수입액(\$1,000)	한국산 품목 비중(%)
인도	2003	557,846	264,867	47.5
	2004	803,747	398,521	49.6
	2005	1,025,736	451,889	44.1
말레이시아	2003	1,959,395	372,590	19.0
	2004	2,598,766	540,488	20.8
	2005	3,157,277	626,209	19.8

출처 : IMF, UNCOMTRADE

- 당초 멕시코는 신축성 조항 미사용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 계수+5를 제안하였으나, 의장은 개도국 계수+3으로 제안
 - 선진국은 기존 입장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멕시코 제안에 대해 추가로 부여되는 계수의 수준이 낮아질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일단은 의장 text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
- 개도국 계수+3 관련, 모든 NAMA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clarification이 필요함
 - 모든 NAMA 품목에 대해 개도국 계수+3이 적용될 경우,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para. 8 신축성 조항보다 더 넓은 범위의 신축성이 부여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대응 방향)

- para. 8 개도국 신축성 조항은 수용 가능
 - 다만, 특정 HS chapter 전체를 배제 불가 조항 관련, 해당 HS chapter에서 단 한 개 HS code만 두고 나머지 품목전체를 para. 8 신축성 조항에 적용시킬 경우가 우려됨.
- 한편, 개도국 계수+3 관련, 모든 NAMA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clarification이 필요함.

4. 양허율이 낮은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NAMA Framework, para. 6)

(모델리티)

- 양허율 35%이하인 개도국의 경우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양허율을 90%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종 평균 양허관세율은 28.5% 이하로 양허
 - 양허는 이행년도 첫 번째 년도부터 적용하되 협상 발효 두 번째 년도부터 9년간 균등 감축, 모든 세율은 증가세로 양허

(검토의견)

- 당초 양허수준에 대해 개도국은 70%를, 선진국은 95%를 선호하는 입장이었음을 감안시 동 모델리티에 대한 개도국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para. 8(b)를 통해 일부 개도국이 5% 미양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95% 양허수준을 선호
 - 양허율 35% 이하인 국가가 90%까지 양허한다는 자체가 ambition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여로 판단되는 바, 의장 text 내용은 수용가능

<para 6 국가 현황>

		양허비율	양허세율	실행세율	실행세율연도
1	카메룬	0.1	57.5	17.5	2001
2	콩고	3.2	15.2	17.4	2002
3	코트디부아르	22.9	8.6	11.6	2004
4	쿠바	20.4	9.5	10.9	2003
5	가나	1.2	35.9	12.5	2004
6	케냐	1.6	54.8	15.7	2004
7	마카오	15.6	0	0	2004
8	모리셔스	5.3	19.5	17.3	2002
9	나이지리아	6.9	48.8	25.8	2002
10	스리랑카	28.3	19.3	8.3	2004
11	수리남	15.1	17	0	2000
12	짐바브웨	9.0	11	15.2	2002

(대응 방향)

- 양허율 35% 이하인 국가가 90%까지 양허한다는 자체가 ambition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여로 판단되는 바, 의장 text 내용은 수용가능
- 한편, 의장 텍스트에 양허는 이행년도 첫 번째 년도부터 적용하되, 협상 발효 두 번째 년도부터 9년간 균등 감축하도록 한 근거에 대한 clarification이 필요함.

5. 분야별 자유화

(모델리티)

- 분야별 자유화 협상은 비의무적(non-mandatory) 참여가 원칙
 - 현재까지 자동차, 자전거, 화학, 전기·전자, 수산물, 임산물, 보석, 공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스포츠용품, 완구, 의류 및 신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분야별 자유화 협상의 향후 협상 진행 방향(의장 indicative 제안)
 - 모델리티 합의와 동시에, 분야별 자유화의 구체적인 모델리티 제시
 - 모델리티 합의 이후 1개월까지 분야별 자유화 참여여부 통보
 - 모델리티 합의 이후 3개월까지 협상 결과를 C/S에 반영

(검토의견)

- '06.6월 의장 텍스트 내용에 추가적으로 sectoral 협상의 향후 추진 계획(indicative 제안)이 제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 sectoral은 관세감축 공식의 종속변수로서가 아니라, 관세감축 공식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개도국 계수의 수준이 기존 입장(15)에서 다소 후퇴되었음을 감안, 개도국 시장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서는 sectoral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활발한 outreach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향후 EC의 sectoral 참여 여부를 주시할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전자 sectoral 한 분야에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여타 분야 sectoral 참여 outreach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UR 당시 우리나라가 관세조화 또는 분야별 무세화에 참여했던 화학, 임산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요 제안국들의 outreach 활동이 활발한 바, 우리의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
- 그러나, 우리에게 민감한 수산물 sectoral에는 불참 입장을 견지하고, 일본, 대만 등과 공조활동을 유지
- sectoral 협상 추진 계획 관련, sectoral은 협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시, 핵심이슈에 대한 모델리티가 확정되었을 때 sectoral 모델리티가 같이 제시될 수 있을지 우려

(대응방향)

- sectoral 협상이 관세감축공식관련 논의의 종속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이나, sectoral 협상은 실질적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동등한 관심(equal attention)이 필요

- 전체 NAMA 및 sectoral 협상 시한을 감안, sectoral 협상의 진전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입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sectoral 협상의 modalities 관련 요소(품목범위, critical mass, 개도국 S&D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점검할 필요 광범위한 품목 범위보다는 가급적 많은 국가들의 공통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6. 소규모 경제 국가(SVEs)

(모델리티)

- 전세계 비농산물 교역의 0.1%이하의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 신축성을 부여

비농산물 평균양허세율	관세 감축 의무	
	최종 평균 양허세율 상한	모든 비농산물 세번의 95%는 최소 10% 감축
50%이상(Fiji 해당)	27%	
30%-50%	18%	
30%미만	14%	

- 양허는 이행년도 초년도부터 적용하되, 9년간 균등 감축, 모든 세율은 증가세로 양허

(검토의견)

- 특정개도국 그룹의 이슈로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SVE에 대한 광범위한 S&D는 실질적인 개도국 세분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SVE에 대해 추가적인 S&D를 부여함으로써 협상 진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

- 따라서, SVE에 대한 추가적인 신축성은 각국의 현실을 감안한 다양한 신축성 부여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개도국 세분화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대응

7. 최빈개도국(LDCs) 및 능력배양

(모델리티)

- LDC는 관세감축 공식 적용 및 분야별 자유화 적용을 면제, 최빈개도국 각각의 판단에 따라 개발 목표에 부합하게 양허 수준과 정도를 높일 것을 기대
- 선진국 및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도국은 홍콩 각료회의시 합의된 Annex F 내용 충실히 이행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확대 이행 현황을 통보
 - 최빈개도국에 대한 혜택 부여 문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과정에 대한 통보와 이행과 관련된 향후 계획 제시

(검토의견)

- LDC 관련 모델리티는 2006년 의장 text에 제시되었으며, 이미 컨센서스가 모아졌으므로, 여타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의견 제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대응방향)

- LDC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확대는 국내적으로 관계부처가 무세화 가능 품목을 종합하는 단계인 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NAMA 협상 동향 및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 low key 유지

8. 신규가입국

(모델리티)

- 신규가입국은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거나 자격이 될 경우 소규모 취약 경제 modalities 적용
-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는 신규가입국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대우가 부여됨
 - 가입관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DDA 의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grace period) 2년 부여
 - DDA 의무 이행기간 2년 연장
-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키르기즈,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은 가입 관련 의무 이상의 관세감축을 이행할 필요 없음
 - ※ 홍콩 각료선언문 para 58은 신규 가입국의 특별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협상과정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토의견)

- 관세감축공식을 적용받는 신규가입 개도국의 모든 품목에 가입 관련 의무 이행 완료 후 2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를 부여하는 것에 더하여 DDA 의무 이행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한다는 의장은

제안은 대다수 회원국들의 제안보다 상당히 관대한 제안이나 기존 우리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농업 의장이 1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과 DDA 의무 이행 기간을 [2]년 연장을 제안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역시 관대함
 - 07.5.22 의장주재 소규모그룹 협의에서 유예기간(grace period)와 관세 감축 이행기간 연장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미국 한 나라에 불과했고, EC,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은 가입 관련 이행이 끝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유예기간 (grace period)를 부여하는 것은 검토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관세감축 이행기간 연장에는 반대
 - 불필요하게 중국(우리의 최대 교역국), 대만(5위), 사우디(6위), 베트남(27위) 등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
- 관세감축공식을 적용받는 신규가입 개도국 가입 관련 의무 이행이 DDA 발효 2년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임.
- 신규가입국 중 체제전환 저소득 국가인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몰도바 3국에 대해 모든 관세감축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의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므로 문제가 없음.
- ※ 2006년 교역규모 : 아르메니아(162위, 6,939천불), 키르기즈(102위, 81,947천불), 몰도바(171위, 5,499천불)
- 06.7월 무역협상위원회(TNC)에 대한 의장 보고서에서, NAMA 의장은 몰도바, 키르기즈, 아르메니아는 체제전환중인 저소득 국가임을 고려할 때 DDA 협상의 결과로 부과되는 관세 감축 의무를 요구받아서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07.7.17 제출한 NAMA의장 draft modality에도 반영됨

※ '07.7.17 농업 의장 draft modality 에서도 이들 국가들에게는 관세감축 면제

- 마케도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은 가장 최근에 가입한 국가들로서(VRAM), 가입관련 의무 이행 이외의 시장 접근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이들 국가의 우리나라 교역에 대한 영향을 먼저 자세히 검토한 후 찬반 결정이 필요함.

※ 2006년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 對마케도니아(5,915천불), 사우디아라비아(23,530,408천불), 베트남(4,852,332천불)

- 기존에 우리는 VRAM도 가입이행기간 종료후 DDA 협상의무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바,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07.5.22 의장주재 소규모그룹 협의에서 미국, EC, 일본 등은 VRAM 역시 가입 이행기간 종료 후 DDA 협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

※ 07.7.17 농업 의장 draft modality에도 이들 국가들에게는 DDA 협상 의무 면제

- 신규가입국들 중, 세계 NAMA 교역량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소규모경제(SVE)에 부여되는 신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설득력 있음.

- SVE에 대한 향후 논의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SVE의 관세 감축 modality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의 그룹중 최종 평균 양허세율 상한을 14%로 감축하는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기존에 우리는 이행기간이 완료된 국가는 신규가입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7.17 의장 draft modality에서 의장은 WTO 설립 이후(1995)에 가입한 회원국은 동 modalities의 목적상 신규가입국이라는 일반이사회의 지침(guidance)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동 지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대응방향)

- 이행기간 연장에 찬성
- 가입관련 이행이 끝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수용가능하나, 일괄적으로 2년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
 - 농업과의 균형을 맞추어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
- 신규가입국들 중, 세계 NAMA 교역량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소규모경제(SVE)에 부여되는 신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설득력 있음.
 - SVE에 대한 향후 논의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해당 국가들의 가입이행기간 종료후 단순 평균 양허 세율을 감안했을때, SVE의 관세 감축 modality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의 그룹중 최종 평균 양허세율 상한을 14%로 감축하는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신규 가입국 현황 >

	회원국	가입일	양허비율	이행기간종료후 단순평균 양허세율	이행최종년도
1	에쿠아도르	96.01.21	99.8	21.1	2001
2	몽고	97.01.29	100.0	17.3	2005
3	파나마	97.09.06	100.0	22.9	2010
4	키르기즈	98.12.20	99.9	6.7	2005
5	요르단	00.04.11	100.0	15.2	2010
6	조지아	00.06.14	100.0	6.5	2005
7	알바니아	00.09.08	100.0	6.6	2009
8	오만	00.11.09	100.0	11.6	2009
9	크로아티아	00.11.30	100.0	5.5	2005
10	몰도바	01.07.26	100.0	6.0	2005
11	중국	01.12.11	100.0	9.1	2010
12	대만	02.01.01	100.0	4.8	2011
13	아르메니아	03.02.05	100.0	7.5	2007
14	마케도니아	03.04.04	100.0	6.2	2012
15	사우디	05.12.11	100.0	10.5	2015
16	베트남	07.01.11	100.0	11.4	

9. 보완적 modality

(모델리티)

- 회원국은 보완적 modality로 R/O(Request & Offer) 사용 가능

(검토의견)

- R/O에 대한 clarification을 요청하며, 보완적 모델리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10. 저율 관세 철폐

(모델리티)

- 각 회원국은 저율 관세 철폐 고려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저율관세 수준에 대한 clarification이 필요함.
- 관세는 각각의 상품의 특성 및 상대적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한 국가가 자주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저율의 관세 역시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책정된 것임.
 - 비록 저율관세가 formula에 의해 감축되어 저율관세 유지의 논리가 미미하더라도 관세는 한 나라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로서, 저율관세는 유지는 회원국들의 재량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비관세장벽(NTBs)

(모델리티)

- NTBs를 줄이거나 철폐하는 것은 도하 mandate를 달성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확인함.

- 문서에 기반한(text-based) 협상이 요구되며, 회원국들의 유사한 제안서는 가급적 통합할 것을 권장
- 회원국들이 최종 C/S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NTBs 논의를 최대한 조속히 종결하도록 지침 부여
- 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충분히 고려
 - ※ NTBs 논의는 NTBs 발굴(identification), 조사(examination), 분류(categorization)등을 통해서 진전되었고, 수출세, 수출제한, 재제조품과 같은 수평적 이슈와 전기, 섬유, 의류, 신발, 여행용품, 임산물 등 수직적 이슈에 대해 legal text와 양자 request가 제출되었으며, NTB 신속해결 메커니즘도 legal text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중
 - ※ 자동차 NTB는 주로 양자간 R/O 방식으로 진행중인바, 07.3월 NAMA 전체대표단 회의시 사무국 취합 Compilation of Text-Based NTB Proposals 및 7.17 의장 초안에서도 누락되어 있음

(검토의견)

- NTBs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 제안서들이 만들어지는데 진전이 있었으나, modalities를 채택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협상이 진전되지는 못한바, 07.7월 draft modality는 06.6월 의장의 NAMA draft modality와 거의 유사하게, DDA에서 NTB의 의의를 강조하고 향후 협상 진행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침.
 - ※ 07.3월 NAMA 전체대표단 회의시 사무국 취합 Compilation of Text-Based NTB Proposals이 제출됨
 - 동 자료에는 동 자료에는 전자(EC), 재제조품(미국), 라벨링(미국 및 EC), 수입허가(일본), 수출세(EC), NTB 신속해결(EC 및 NAMA 11), 임산물(뉴질랜드) NTB 제안서가 수록됨. (총 7개)

※ 현재 진행중인 NTB 협상 분야는 총 8개

- 전자(EC), 재제조품(미국), 라벨링(미국 및 EC), 수입허가(일본), 수출세(EC), NTB 신속해결(EC 및 NAMA 11), 임산물(뉴질랜드), (R/O 방식) 자동차 관련 NTB
 - 07.6월 NAMA 협상주간에 EC, 인도 공동주재로 NTB 신속해결 메커니즘 관련 복수국간 협의 개최하여 EC 와 NAMA 11은 NTB 신속 해결 메커니즘 통합 제안서 초안 회람하고 07.7월 EC 와 NAMA 11은 NTB 신속해결 메커니즘 제안서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초안을 보완한 공동제안서를 회람하고 노르웨이, 스위스, LDC, 아프리카 그룹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NTB 협상은 향후 문서에 기반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존 NTB 관련 문서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 NTB 제안 compilation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 우리 업계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NTB 제안서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
- 의장은 일부 NTBs 관련 회원국들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제안들은 재구성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제안함
-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 또는 철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수출세, 수출제한 NTB와 같이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는 제안서의 경우, 철회되지 않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 지지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대응방향)

- 우리 업계에서도 애로사항이 표출되었던 수출세 및 수출제한 NTB에는 지속적으로 지지의사 표명
 - 7.17 의장 draft modalities상 NTB 목록에 일단 포함되었으나 개도국들은 동 NTB 제안이 NAMA mandate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가 강경한 바, 향후 동 제안서 철회 등 극단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있음.

12. 특혜잠식

(모델리티)

-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들(미국, EC)의 개도국 관심 수출 품목에 대한 MFN 관세 감축은 7년간 이행(일반적으로는 5년)
 - EC의 23개 품목(수산물, 의류 등)에 대해 2년의 추가 이행기간 부여(Annex [2])
 - 미국의 16개 품목(의류)에 대해 2년의 추가 이행기간 부여(Annex [3])

(검토의견)

- 특혜잠식 문제 해소방안이 MFN 자유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non-trade solution과 trade solution의 조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신축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기존 입장이었는바, 이번 의장 초안은 결국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

- 특혜잠식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은 특혜 수혜국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제한적인 수의 수출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공급 부분의 능력 부족이라는 것에 동의함. 따라서 모든 회원국들은 non-trade solution인 개발 원조가 특혜잠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런 개발 원조의 효과는 중장기적일 것이라는 의장의 의견은 일견 타당함.
 - 그렇다면 trade solution으로 가장 impact가 적은 것은 역시 이행기간 연장이라고 생각됨. 실제로 많은 회원국들은 특혜 수혜국이 가장 중요한 이해를 갖는 일부 제한된 수의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이행기간의 제한적인 연장을 지지했음.
- 특혜잠식 범위(scope)와 관련, 사무국은 가장 중요한 품목 및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EC, 미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고, 동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의장은 특혜 수혜국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수출품목의 리스트(수산물, 의류 등)를 modalities초안 Annex 2와 Annex 3에 포함시킴
- 그러나 이들 품목은 동시에 미국과 EC의 민감품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 여타 많은 국가들이 민감성을 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특혜잠식이라는 명목하에 미국과 EC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이행기간 연장을 통한 민감성의 인정은 국가간 이익의 균형을 해치고 있음.
 - Annex 2, Annex 3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중, 미국 및 EC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품목과의 경합성 및 대체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입장을 정할 필요 있음

※ 한-미 FTA 및 한-EU FTA의 품목 범위와의 비교 필요

- 그러나 동 초안은 특혜 수혜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 단지 2년의 이행 기간 연장을 부여하고 있는바,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 없이 동 제안을 반대하는 것은 특혜수혜국들의 반발을 야기할 위험이 있음.
- 특혜 수혜국들의 수출은 몇몇 소수의 품목에 매우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수의 품목을 가지고도 특혜잠식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을 향후 더욱 걸러내어 줄여나가야 한다는 조건 지지함.

(대응방향)

- 특혜잠식 문제 해소방안이 MFN 자유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non-trade solution과 trade solution의 조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신축적 대응
- 그러나 동 초안은 특혜 수혜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 2년의 이행 기간 연장을 부여하고 있는바,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 없이 동 제안을 반대하는 것은 특혜수혜국들의 반발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행기간 연장은 2년이상인 되어서는 안되며, 이행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을 향후 더욱 걸러내어 줄여나가야 한다는 조건하에 긍정적으로 검토

13. 비농산물 환경 상품

(모델리티)

- 환경 상품 관련 무역과 환경 특별위원회(CTESS) 작업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동 작업으로부터의 지침(guidance)에

따라 비농산물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와 NTBs를 줄이거나, 적절한 경우 철폐하기 위한 협상 개시 필요

(검토의견)

- 일부 개도국들이 NAMA 협상에서 환경 상품 논의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의장 초안의 모델리티에 환경상품 협상을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의장이 선진국들의 의견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함.
- 그러나 CTESS의 작업의 지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member-driven negotiation으로서의 DDA 협상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
 - 의장의 검토의견처럼, 회원국들이 CTESS에서 환경상품을 다루기 위한 접근방법에 동의하기 전에는 NAMA modalities에서 환경상품을 다루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07.6월 관계부처대책회의에서 CTESS 논의와 병행하여 NAMA에서 환경상품 자유화 방식에 대한 논의 진행
 - CTESS 및 NAMA 양자에서 우리 민감품목이 환경상품 자유화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시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 CTESS는 환경상품 목록을 통해, NAMA는 관세철폐 모델리티를 통해 우리이익 추구
 - 모든 국가의 환경편익 향유 및 우리의 개도국 시장접근 확보을 위해 모든 국가가 환경상품 자유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Mandatory 접근)

-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유보하기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이 각각 자국 사정에 따라 일정 퍼센트(선진국 : X%, 개도국 : Y%)의 환경상품(민감상품)에 대해 무역 자유화를 유보하는 자유화 방식 제안 검토

※ 단, 제안시기는 협상 진전동향 보아가며 결정 필요

(대응방향)

- 환경상품의 대우와 관련하여, 각료들이 NAMA mandate에서 환경상품을 따로 언급한 것을 볼 때, 의장은 각료들이 다른 여타 상품 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의도한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NAMA 협상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초를 가지고 대응

첨 부 : 1. NAMA에서 농업으로 이관될 품목 리스트(HSK 총 76개)

《 첨부 1 》

NAMA에서 농업으로 이관될 품목 리스트
[HSK 총 76개]

번호	품목번호	품 명	'06 양허세율	비 고
1	0106 90 3010	갯지렁이	11	
2	0106 90 3020	실지렁이	11	
3	0208 40 0000	고래,돌고래류	30	
4	0208 90 9010	해양동물의 것	30	
5	0507 90 2020	고래수염과 그 털	11	
6	1212 20 1010	김 마른 것	20(기)	미양허
7	1212 20 1020	김 냉장한 것	20(기)	미양허
8	1212 20 1030	김 냉동한 것	45	
9	1212 20 1090	김 기타	20(기)	미양허
10	1212 20 2010	미역 건조	20	
11	1212 20 2020	미역 염장	20	
12	1212 20 2030	미역 냉장	20	
13	1212 20 2040	미역 냉동	45	
14	1212 20 2090	미역 기타	20	
15	1212 20 3010	툰 건조	20	
16	1212 20 3020	툰 냉장	20	
17	1212 20 3030	툰 냉동	45	
18	1212 20 3090	툰 기타	20	
19	1212 20 4010	파래 신선	20	
20	1212 20 4020	파래 냉장	20	
21	1212 20 4030	파래 냉동	45	
22	1212 20 4090	파래 기타	20	
23	1212 20 5010	다시마 염장	20	
24	1212 20 5020	다시마 냉장	20	
25	1212 20 5030	다시마 냉동	45	

번호	품목번호	품 명	'06 양허세율	비 고
26	1212 20 5090	다시마 기타	20	
27	1212 20 6010	우뭇가사리 냉동	45	
28	1212 20 6090	우뭇가사리 기타	20	
29	1212 20 7011	돌가사리 냉동	45	
30	1212 20 7019	돌가사리 기타	20	
31	1212 20 7021	뜯세모가사리 냉동	45	
32	1212 20 7029	뜯세모가사리 기타	20	
33	1212 20 7031	불등가사리 냉동	45	
34	1212 20 7039	불등가사리 기타	20	
35	1212 20 8011	도박 냉동	45	
36	1212 20 8019	도박 기타	20	
37	1212 20 8021	진두발 냉동	45	
38	1212 20 8029	진두발 기타	20	
39	1212 20 8031	말 냉동	45	
40	1212 20 8039	말 기타	20	
41	1212 20 9011	코토니 및 스피노잠(냉동)	45	
42	1212 20 9019	코토니 및 스피노잠(기타)	20	
43	1212 20 9091	코토니 및 스피노잠(냉동)	45	
44	1212 20 9099	코토니 및 스피노잠(기타)	20	
45	1302 31 1000	실한천	11	
46	1302 31 2000	분한천	11	
47	1302 31 9000	기타	11	
48	1516 10 2000	경유와 그 분획물	11	
49	1521 90 1000	경납	11	
50	2104 10 2000	스프,브로드(어류의 것)	30	
51	2106 90 4010	김 조제 식료품	8(기)	미양허
52	2106 90 4090	기타 조제 식료품	8(기)	미양허
53	2905 45 0000	글리세롤	13.1	HS96 과생
54	3302 10 2011	알콜성 합성 조제품	30	
55	3302 10 2019	기타 음료제조용 조제품	11.2	
56	3302 10 2090	기타	11.2	
57	3823 11 0000	스테아린산	13.1	HS96 과생

번호	품목번호	품 명	'06 양허세율	비 고
58	3823 12 0000	올레인산	13.1	"
59	3823 13 0000	톨유 지방산	13.1	"
60	3823 19 1000	팔미틴산	13.1	"
61	3823 19 2000	유지 애시드유	13.1	"
62	3823 19 9000	기타	18	"
63	3823 70 1000	세틸 알콜	18	"
64	3823 70 2000	스테아릴 알콜	18	"
65	3823 70 3000	올레일 알콜	18	"
66	3823 70 4000	라우릴 알콜	18	"
67	3823 70 9000	기타	18	"
68	4101 20 2000	소 전신원피(유연처리)	10	
69	4101 50 2000	소 전신원피(유연처리)	10	
70	4101 90 2000	버트,벤드(유연처리)	10	
71	4102 21 2000	면양(유연처리)	10	
72	4102 29 2000	면양(유연처리)	10	
73	4103 10 2000	기타 원피(유연처리)	10	
74	4103 20 2000	파충류(유연처리)	10	
75	4103 30 2000	돼지(유연처리)	10	
76	4103 90 2000	기타(유연처리)	10	

/끝/